

종합감사

---

# 감사결과보고서

## - 국가기상위성센터 -

---

2015. 7.



기 상 청  
감 사 담 당 관

# 목 차

<b>I . 감사실시 개요</b> .....	<b>1</b>
1. 감사목적 .....	1
2. 감사 대상 및 범위 .....	1
3. 감사실시근거 .....	1
4. 감사중점 .....	1
5. 감사기간 및 인원 .....	1
<b>II . 일반현황</b> .....	<b>2</b>
1. 조직 및 인력 .....	2
2. 예산 .....	3
3. 주요 성과 .....	4
<b>III . 감사결과</b> .....	<b>6</b>
1. 총 평 .....	6
2. 주요 문제점 .....	7
3. 처분요구 사항 .....	9
4. 처분요구서 .....	10
5. 모범사례 .....	27

## 1. 감사 목적

- 기상위성 활용 및 기술 개발, 차기 위성 준비 상황, 인사·회계 운영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기상위성 업무의 성과 증진에 기여

## 2. 감사 대상 및 범위

- 대상 : 국가기상위성센터
- 범위 : 최근 3년간(2012~2014년) 수행한 업무 전반

## 3. 감사 실시 근거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791호, 2015.1.22.)
- 2015년도 자체감사 운영 기본계획(2015.4.7.)

## 4. 감사 중점

- 기상위성운영기반 구축 및 기상위성자료 예보활용 지원
- 기상위성 지상국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 기상위성분석자료 기후·환경·방재분야 활용 실태
- 예산집행, 인사·복무 및 성과관리 업무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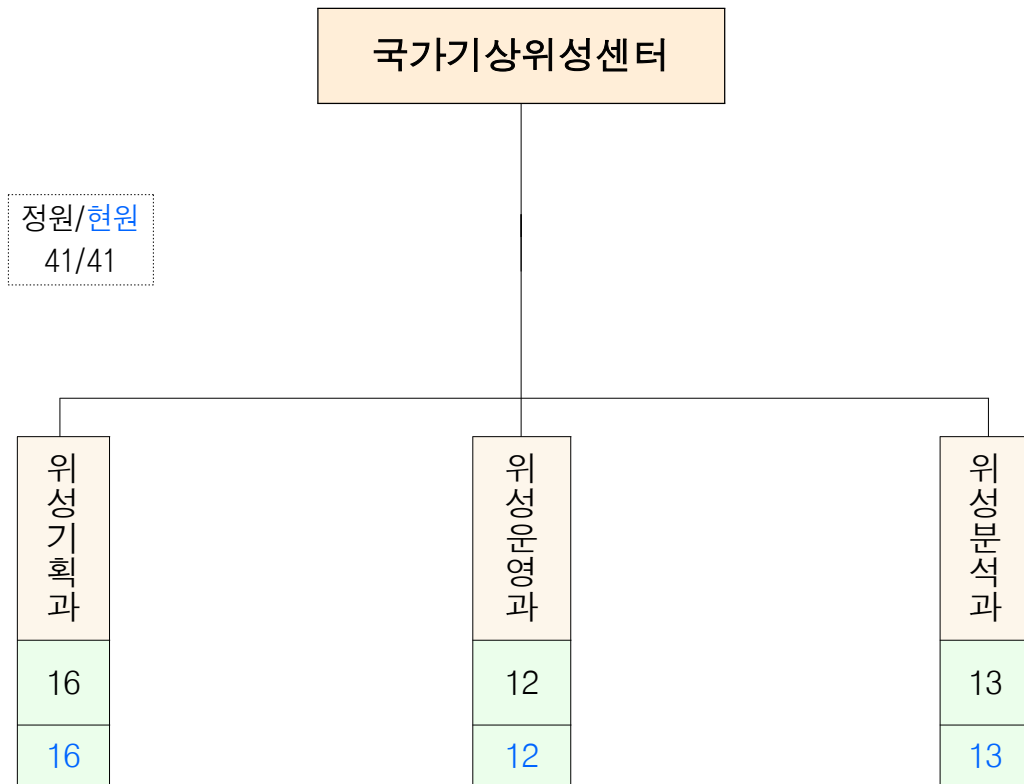
## 5.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 5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5명

## II 일반현황

### 1. 조직 및 인원

#### 가. 조직



#### 나. 인원 (2015.4.1. 현재)

(단위 : 명)

구분	3·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현원	1/1	3/3	11/11	15/15	6/6	3/3	2/2	41/41

## 2. 예 산

###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예산	'14 예산	'15년 예산
계	25,358	48,971	70,855
1. 인건비	2,678	2,760	2,917
2. 기본경비	278	269	235
3. 주요사업비	22,402	45,942	67,703

### 나. 주요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예산	'14 예산	'15 예산
회계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명			
합 계		22,402	45,942	67,703
일반 회계	소 계	22,402	45,942	67,703
	◦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R&D)	12,402	11,162	10,573
	◦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R&D)	10,000	32,000	42,130
	◦ 정지궤도기상 위성 지상국 개발 (R&D)	0	2,780	15,000

### 3. 주요 성과

#### 가.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Geo-KOMPSAT 2A) 개발 추진

- 기상탑재체 개발을 위해 Spacewire 접속 시뮬레이터 및 Gyro data 처리를 위한 기상탑재체 비행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기상탑재체 예비설계를 완료하였음.
- 정지궤도기상위성을 위한 우주기상탑재체 자력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지궤도기상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확보를 위하여 25종의 기상요소 알고리즘과 3종의 우주기상요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음.

#### 나. 위험기상 대응 기상위성자료 활용 확대

- 위성 자료를 활용한 수치예보 현업지원 강화를 위해 위성자료의 수치예보 활용 중기협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치예보모델 실험 및 현업지원용 천리안위성 산출물을 제공하고 위성자료의 품질진단시스템 및 민감도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음.

※ 현업 지원용 개선된 천리안위성 산출물 제공

– 고해상도 청천복사량), 해빙/적설, 고해상도 바람, 토양수분

- 위성자료의 기후변화 감시·예측·활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지구위성자료 상호검정시스템(GSICS) 웹페이지를 최적화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Level 3<sup>1)</sup> 산출물의 수요 발굴 및 그에 따른 생산, 분석, 자료관리 등에 대한 활용체계를 구축하였음.
- 우주기상 예보를 위하여 우주기상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우주기상 대국민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우주기상 DB에 WMO의 국제 표준을 적용하였음. 또한 극항로 항공기상 및 기상위성 운영을 위한 우주기상 가이드스를 개발하였으며, 우주기상 역량 강화를 위한 NASA 우주기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한국-미국(NASA)-덴마크(DTU<sup>2)</sup> 우주기상 주간 브리핑에 참여하는 등 우주기상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1) 상세 검보정 과정을 거친 시·공간적 정보를 포함하는 위성 산출물

2) Denmark University of Technology

#### 다. 기상위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기상위성 전문인력 전문성 제고

- 기상위성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음.
  - 제19차 국제 TOVS<sup>3)</sup> 컨퍼런스 개최( '14.3.26.~4.1., 제주)
  - 전지구위성자료상호검정시스템(GSICS) 연구 및 자료실무그룹 합동회의 참가( '14.3.24.~28., 독일)
  - 국제 대류 실무그룹 워크숍 참가( '14.4.7.~11., 크로아티아)
  - 제42차 기상위성조정그룹(CGMS<sup>4)</sup>) 회의( '14.5.19.~23., 중국)
  - 전지구 위성자료 교환회의(APSDEU-NAEDEX) 참가( '14.5.26.~29., 중국)
  -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Civil Space Dialogue) 참가( '14.7.1., 미국)
  - 2014 유럽 기상위성 컨퍼런스 참가( '14.9.22.~26., 스위스)
- 기상위성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대상 기상위성 계절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맞춤형 기상지식을 전파(78회, 1,878명)하였음.

#### 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

- 진천군 보건소와 공동으로 건강관리, 금연교실 등을 정기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정의 날을 확대(주 1회 → 2회) 운영하고 있음.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위하여 기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직원 생일·기념일에 '이벤트 데이' 를 매월 운영하고 있음.

3) TOVS : TIROS Operational Vertical Sounder (최초 현업용 미국 극궤도위성(TIROS) 이후 지속적인 대기탐측 관측기기 및 자료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

4) CGMS : Coordination Group for Meteorological Satellites (WMO 기상위성조정그룹)

### Ⅲ 감사결과

#### 1. 총 평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기상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상위성으로부터 영상자료를 수신·생산하여 예보, 기후, 응용분야 등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자료제공 서비스 외에 예보, 기후, 수문, 재해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천리안기상위성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료 품질 및 서비스 체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진 IT 운영관리체계를 도입하여 ISO20000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리청의 기상위성 운영 수준을 대변할만한 성과이다.

또한 위 센터는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2018년)의 우주기상탐재체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후속위성 운영시 자료의 종류와 규모가 크게 확대 될 것에 대비하여 자료처리 운영 인력의 역량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위 센터는 위성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연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 반납액을 다음연도 3월에야 국고에 귀속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위성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에 일부 물품이 중복적으로 반영되어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선금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크게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채용기준, 보수지급 기준, 근무성적평정 및 복무 등을 아우르는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주요 문제점

### ① 연구용역사업 과제관리 부적정

- 2014년 12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용역 종료 후 ‘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미 준수

- (원인)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연구용역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조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연구용역 관리업무 철저  
    관련 기관에 주의 촉구 <주의>
- (관련기관) 국가기상위성센터

### ② ‘차세대 기상탐재체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 수행 부적정

- ‘차세대 기상위성 기상탐재체 운영 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자체 예산집행심의회 의결만을 거쳐 당초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과 전혀 다르게 용역 사업 수행
- 연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3년 12월 31일 계약금액 7억 원이 사업 대가로 지급되었고, 이듬해 3월 19일에서야 정산 결과에 따라 93,682,644원 반납 조치

- (원인) 관련 행정절차 미 준수 및 용역계약 관리 소홀
- (조치) 연구용역 수행시 관련 규정과 주어진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연구용역 대가 지급시 계약금액이 아닌 정산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주의>
- (관련부서) 위성운영과

### ③ 위성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중복 과다 계상

- 위성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유지보수료를 산정하면서 이미 유지보수 대상에 반영된 하드웨어(3조/도입가 19,300,000원)을 응용개발 부문에 중복으로 책정하여 3년간 총 6,835,416원을 과도하게 계상

- (원인) 유지보수 대상 물품 및 응용개발 내역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치) 중복으로 과다 계상된 6,835,416원(3개년 총액) 중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집행된 4,422,916원 회수조치, 2015년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반영된 2,412,500원은 계약변경 등을 통해 차감조치 <시정>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주의>

### ④ 선금 지급 및 공사의 분할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선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지연 사유에 대한 통보도 없이 2개 사업에 대해 각각 49일과 72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 단일 공사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분할하여 자체 수의계약으로 추진

- (원인) 계약기관의 의무 소홀, 관련 법·규정 보다 행정편의 우선
- (조치) 선금 지급 및 계약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주의>
- (관련부서) 위성기획과

### ⑤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 2014년에 연구원 퇴직금 확보를 위해 46,423,490원을 전용한 바 있으면서도 2015년도 예산 미 확보
- 연구원에 대한 채용기준, 보수지급 기준, 근무성적평정 및 복무 등을 규정하지 않은 채 매년 ‘직급별 보수지급 보수표 및 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연구원의 직업 안정성과 근로의욕 저해

- (원인) 연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조치) 연구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의 채용 기준·보수·인사 및 복무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합리적·체계적 규정 마련 <통보>
- (관련부서) 위성기획과

### 3. 처분요구 사항

#### ○ 종합

구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통보	현지시정	계	모범사례
건수	-	1(기관) 2(부서) 1(개인)	1	-	1	-	6	1

#### ○ 처분요구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종류	대상기관(부서)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	연구용역사업 과제관리 부적정	주의	국가기상 위성센터	-	-
2	차세대 기상탐재체 운영기술 개발 연구 용역 수행 부적정	주의	위성운영과	-	-
3	위성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중복 과다 계상	시정 주의	-	6,835,416원 회수	주의 (1명)
4	선금 지급 및 공사의 분할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위성기획과	-	-
5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통보	위성기획과	-	-

#### ○ 모범사례

번호	제목	관련기관(부서)
1	기상위성업무 노하우 공유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위성기획과

## 4. 처분요구서

주 의					
번호	1	소 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관련부서	위성기획과, 위성운영과, 위성분석과
제 목 : 연구용역사업 과제관리 부적정					
<p>1. 내 용</p> <p>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자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과제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p> <p>〔(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규정 제13조(활용결과보고서 등록)에는 용역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를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따라서, 용역과제별 과제담당자는 위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사업의 추진일정 이행사항 및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등록 하는 등 연구용역사업의 과정과 결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p> <p>그런데, 위 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총 12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모든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과제수행기간 동안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용역과제가 종료되었으나 “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과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p>					

그 결과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을 위한 연구용역과제의 중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부분도 부실하게 관리되었다.

[표] 2014년 연구용역사업 및 점검·활용 보고서 작성·등록 현황

사업명	사업부서	과제수행기간	점검결과서 작성여부	활용결과보고서	
				작성여부	등록여부
위성자료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및 위성정보시스템 개선	위성운영과	'14. 5. 2~11.30	X	X	X
천리안위성 기상영상 전처리 품질 유지 및 관리기술 개발	위성운영과	'14. 5.14~11.30	X	X	X
위성자료의 예보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위성분석과	'14. 5.20~12.10	X	X	X
위성자료의 수치모델 활용 지원 기술 개발	위성기획과	'14. 5. 2~12.10	X	X	X
천리안 위성자료의 기후표준DB 구축을 위한 핵심기후변수 산출기술 개발	위성기획과	'14. 7. 8~12.10	X	X	X
우주기상 통합예보시스템 구축(2)	위성기획과	'14. 6. 2~12.10	X	X	X
우주기상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위성기획과	'14. 7.16~12.10	X	X	X
한국형 기상환경 위성영상처리 기본체계 개발(5)	위성운영과	'14. 1.13~11.30	X	X	X
우주기상 예보를 위한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5)	위성기획과	'14. 1.22~11.30	X	X	X
위성을 이용한 해양기상요소 산출기술 개발(4)	위성분석과	'14. 1.20~11.30	X	X	X
기상위성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4)	위성기획과	'14. 1.14~11.30	X	X	X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성과분석	위성기획과	'14. 7. 2~ 9. 1	X	X	X

## 2. 조치할 사항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2014년도에 추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연구용역사업 수행 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과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관련부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위성운영과, 위성분석과

## 주 의

번호	2	소 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관련부서	위성운영과
----	---	-----	----------	------	-------

**제 목 : ‘차세대 기상탐재체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 수행 부적정**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는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기상탐재체 운영(2018.5. 발사 예정)에 대비하여 위성통신, 전산 및 시스템 사전 운영기술 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차세대 기상탐재체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2013년 8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수행하였다.

[표1] ‘차세대 기상탐재체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013.2.	차세대 기상탐재체 선정 - 제3차 정지궤도 복합위성 기상탐재체 개발위원회	
2013.4.15.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개최	
2013.8.1.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계약금액/계약기간 : 700백만원/2013.8.1.-11.30.	
2013.11.25.	최종 보고 및 평가회 개최	
2013.11.27.	계약상대자의 검사 요청	
2013.12.4.~10.	검사 실시	
2013.12.	회계부서에 검사 완료 통보 및 대금지급 요청	
2013.12.31.	계약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2014.2.27.	연구용역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새빛회계법인)	
2014.3.6.	용역 사업 정산 잔액 세입 요청(수입징수관)	

### 가. 연구용역 사업 처리절차 부적정

「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기상청 훈령, 2009.6.29.)」 제9조(용역과제 추진계획서 제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말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제의 적합성,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제3조(승인사항)는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을 추가 실시하거나 심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예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2014년도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차세대 기상위성 기상탑재체 운영 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품질 유지 및 관리기술 개발’ 사업 대신 자체 예산집행심의회 의결만을 거쳐 당초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전혀 다르게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표2] '차세대 기상탑재체 운영기술 개발' 관련 예산집행심의회 의결 내역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편성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2013년 예산	
용역명	예산액	용역명	예산액	용역명	예산액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품질 유지 및 관리기술 개발	1,000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품질 유지 및 관리기술 개발	1,005	차세대 기상탑재체 운영기술 개발	700
				위성자료 예보 및 활용기술 개발	300

그 결과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수행함으로써 「연구용역 사업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소요예산이 7억 원인 용역사업을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 수행하여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또한 위반하게 되었다.

## 나. 연구개발 용역의 정산에 관한 사항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6조에 따르면 용역수탁기관은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의 7일전에 총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현황, 비목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회계법인은 용역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6.11.1.에 따르면 “사업의 정산은 기상청과 위탁 정산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업수행자는 기상청 지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정산서류를 해당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6.11.2.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종료 7일전까지 제출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상청의 ‘용역사업 정산지침’ 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업종료 7일전까지 회계법인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회계법인의 용역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가 계약종료일까지 사업담당부서에 도착될 수 있도록 계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회계법인의 용역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가 계약종료일(2013.11.30.)까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2013년 12월 12일 회계부서에 검사 완료통보하였다.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연구비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회계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정산보고서가 다음 해인 2014년 2월 27일에서야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게 정산서류의 조속한 제출을 종용하는 공문서를 한 차례도 시행한 바가 없다.



[표3] 계약기간 중 사용내역을 계약종료 후 회계처리한 현황

지출일자	내역	지출금액
2013.12.9.	국내출장비 정산	41,650원
2013.12.17.	참가비 환율 오류 적용	1,800원
2013.12.29.	법인카드 집행분 대체	7,757,424원

\* 용역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

그 결과 연구비의 정산 지연으로 계약금액 전액인 7억 원이 사업대가로 2013년 12월 31일에 지급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집행잔액으로써 2013년도 말에 불용처리 되었어야 할 아래 표4의 정산 반납액 93,682,644원이 77일 후인 2014년 3월 19일에서야 뒤늦게 국고에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4] 차세대 기상탐재체 운영기술 개발 정산 결과

(단위 : 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회계법인 정산 결과		
		집행액	불인정액	반납액
700,000,000	2013.8.1.~11.30.	606,317,356	0	93,682,644

## 2. 조치할 사항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 ① 연구용역을 수행할 시에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의 결과를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긴급한 사유로 추가로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해야할 경우에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과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연구용역 사업의 계약관리에 있어서는 제안요청서 등 계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법규에 따라 과업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특히 연구용역 사업 정산에 대하여는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과 계약서에 따라 용역사업 대가지급 시 계약금액 총액이 아닌 정산 금액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 부서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부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시 정 · 주 의

번 호	3	소관기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관련부서	위성운영과
-----	---	------	----------	------	-------

제 목 : 위성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중복 과다 계상

### 1. 내 용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는 위성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를 위해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하 통합유지보수)’ 장기 계약(2013. 3. 4.부터 2015. 12. 31.까지 / (주)오상자이엘 / 최초 계약액 7,077,0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계약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통합유지보수 용역 장기계약 및 변경계약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장기1차(2013.3.4)	2013.3.1~2013.12.31	(10개월)1,977,682,190	-
장기2차(2014.1.1)	2014.1.1~2014.12.31	2,475,629,290	대상물품 변경 등
장기3차(2015.1.1)	2015.1.1~2015.12.31	2,475,629,290	대상물품 변경, ITSM 고도화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는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응용개발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각 대상별로 유지보수 용역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유지보수 대상의 가격 및 수량 등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포함될 응용개발소프트웨어를 선정 하면서, 2010년에 수행한 ‘통신해양기상위성 궤도상시험 및 정상운영 지원시스템

개발' 용역의 경우, 사업 결과에 응용개발 외 하드웨어(워크스테이션) 2조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전체 사업비 291,900,000원을 응용개발 유지보수 대상 금액으로 책정하였고, 또 2011년에 수행한 '천리안기상위성 지상국운영지원시스템 개발' 용역 역시 사업 결과에 응용개발 외 하드웨어(리눅스서버) 1조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전체 사업비 272,000,000원을 응용개발 유지보수 대상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표2] 응용개발과 하드웨어가 중복으로 계상된 용역사업

응용개발명	개발상세	도입시기	납품사	요율	사업비(원)	유지보수료원
통산해양기상위성 궤도상시험 및 정상운영 지원시스템 개발	천리안품질수집시스템 (PAM-P/S) 천리안위성영상품질표 출시스템(DAM) 운영감시시스템(COOS) 천리안위성M표출시스템 (기상탐재체운영현황표출 시스템)	2010.12	썬트랙아이 ,솔탑	125 %	291,900,000	36,487,500
천리안기상위성 지상국운영지원 시스템 개발	천리안품질수집시스템 (PAM-P/S) 천리안위성영상품질표출 시스템(DAM) 운영감시시스템(COOS) 기하보정이상대응시스템 (GCM)	2011.12	썬트랙아이 ,솔탑	125 %	272,000,000	34,000,000

더욱이 위 부서는 위 두 개 사업으로 도입된 바 있는 하드웨어 3조(워크스테이션 2조, 리눅스서버 1조)를 유지보수 대상 기타서버군에 포함시켜 유지보수료를 따로 책정하였다.

[표3] 기타서버군에 포함되어 중복으로 계상된 하드웨어

장비명	장비상세	도입시기	납품사	요율	도입가(원)	유지보수료(원)
천리안위성 운영감시시스템(COOS)	Z400_xx.xx.1 1.41	2010.12	셋트랙아이 , 솔탑	7.5%	5,000,000	375,000
MIPEOS (KMA_MiView)	Z400_xxx.xx. 10.198	2010.12	셋트랙아이 , 솔탑	7.5%	5,500,000	412,500
천리안위성자료재분석 시스템 기하보정이상대응시스 템(GCM)	HP Z400 Workstation	2011.12	셋트랙아이 , 솔탑	7.5%	8,800,000	660,000
합계					19,300,000	

한편 위 부서는 통합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7.5%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였고, 상용S/W 및 응용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12.5%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이미 유지보수 대상에 반영된 하드웨어(3조)에 대한 도입가 19,300,000원이 응용개발 부문에 중복으로 책정되면서 2013년에 2,010,416원(10개월분), 2014년 2,412,500원, 2015년 2,412,500원 만큼 과도하게 계상(3개년 총 6,835,416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조치할 사항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①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응용개발 부문과 하드웨어 부문에 중복으로 과다 계상된 6,835,416원(3개년 총액) 중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집행된 4,422,916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2015년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반영된 2,412,500원은 계약변경 등을 통해 차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유지보수 대상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 주 의

번 호	4	소 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관련부서	위성기획과
-----	---	-----	----------	------	-------

제 목 : 선금 지급 및 공사의 분할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1. 내 용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는 2013년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선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청사 및 순찰로 LED 설치·교체 공사’를 추진하였다.

#### 가. 선금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제1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 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 자금사정 등으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한국형 기상환경 위성영상처리 기본체계 개발」 등 2개 사업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선금 청구일로부터 각각 49일과 72일이 경과한 후에야 선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부서는 당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선금을 지연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은 채 규정(14일 이내) 보다 ‘한국형 기상환경 위성영상처리 기본체계 개발’ 사업의 경우 35일, ‘위성을 이용한 해양기상요소 산출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58일이나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표1] 선금지급 지연 현황

(단위 : 원)

연구용역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선금지급 청구일	선금청구 금액	선금지급 비율(%)	선금지급 결정일	선금지급 일
한국형 기상환경 위성영상처리 기본체계 개발	132,000,000	(주)솔탑	<b>2013.04.02</b>	66,000,000	50	2013.05.16.	<b>2013.05.21.</b>
위성을 이용한 해양기상요소 산출기술 개발	125,454,540	서울대 산학협력단	<b>2013.03.25.</b>	62,727,270	50	2013.06.03.	<b>2013.06.05.</b>

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위 연구용역사업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 지급, 자재확보 등 사업 초기에 투입되어야 할 선금을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나. 공사의 분할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그런데 위 부서는 아래의 [표2]와 같이 ‘LED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성격의 공사임에 불구하고 시일이 촉박(연도 말 사업)하다는 사유로 공사를 청사 부분과 순찰로 부분으로 분리하여 분할계약 하였다.

[표2] 2013년도 청사 및 순찰로 LED 설치 및 교체 공사 현황

(단위 : 원)

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순찰로 LED 보안등 설치 공사	21,750,000	11.1.~11.29.	(주)누리플랜	수의회약
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	19,800,000	11.21.~12.26.	(주)누리플랜	수의회약
	41,550,000			

그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계약 대상인 ‘청사 및 순찰로 LED 설치·교체 공사’를 기관 편의에 따라 자체 수의회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조치할 사항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①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선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30조에 따라 수의회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관련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부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 통 보

번 호	5	소 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관련부서	위성기획과
-----	---	-----	----------	------	-------

**제 목 :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 1. 내 용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는 기상위성 기술 개발과 자료 활용 확대 등의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이하 ‘연구원’)를 아래 표1과 같이 채용·운영해 오고 있다.

[표1]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 운영 현황(2015.5.22.기준)

부서명	선임연구원 (연구관 상당)	연구원			계
		가급(연구사상당)	나급(8급상당)	다급(9급상당)	
위성기획과	0	2	6	2	10
위성운영과	0	2	4	1	7
위성분석과	0	1	6	2	9
계	0	5	16	5	26

### 가.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의 퇴직금 확보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지침」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110-02목)에



대한 퇴직금은 연금지급금(320-03)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부서는 연구원의 퇴직금을 2012년 12월 27일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2] 퇴직연금 운용현황/ 2015.5.22.기준

가입연구원수	가입기관	운용방법	납부방법	총납부금액
27명	근로복지공단	확정기여형	연납	148,683,370원

따라서 연구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다음년도  
소요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연금지급금(320-03) 비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2014년도에 연구원 퇴직금 확보를 위해 46,423,490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전용한 바 있으면서도 2015년도 예산에도 연구원 퇴직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표3]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증		감		비고
예산과목	예산	예산과목	예산	
3137-301-320-03 (기상관측위성개발의 연금지급금)	46,423	3137-301-110-02 (기상관측위성개발의 기타직보수)	△46,423	

그 결과 연구원의 퇴직금 확보를 위해 매년 예산 전용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비정규직 퇴직금의 안정적 확보가 우려되고 있다.

#### 나.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 운영·관리 미흡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상청 무기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보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부서는 실지감사 중인 현재 연구원 2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4에서와 같은 예산 증가 추세에 비추어 향후 연구원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연도별 비정규직 운영 현황/ 예산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증가율)	2013년(증가율)	2014년(증가율)	2015년(증가율)
예 산	833	767(-7.9%)	891(16.2%)	1,052(18.1%)
정 원	31	27(-12.9%)	28(3.7%)	33(17.9%)

따라서 정규직 정원의 63.4%(실지감사일 현재 : 정규직 정원 41명)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채용기준, 보수 및 근무성적평가 등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는 채용기준, 보수, 근무성적평정 및 복무 등 연구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아래 표5와 같이 전년도말과 매년 초에 당해 연도 보수지급기준(보수월액), 호봉획정 및 근무성적평정계획만을 담고 있는 ‘직급별 보수지급 보수표 및 운영계획(이하 ‘보수지급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13 ~ ‘14년도에는 2회에 걸쳐 기 통보한 보수월액을 조정하는 등 당해 연도 기준을 별도로 시달함으로써 당사자인 연구원의 혼란을 야기했다.

[표5] 연도별 보수지급기준 등 통보 현황

연 도	비정규직 보수지급기준 알림		비 고
	문서시행일자	주요내용	
2013년	2012.11.28.	2013년 채용기준 및 보수조건표	
	2013.1.23.	2013년 직급별 보수월액 및 호봉획정	
2014년	2013.12.14.	2014년 채용기준 및 보수월액, 근무성적평정계획	보수월액에 포함 된 명절휴가비를 별도 지급으로 변경 등
	2014.1.23.	2014년 직급별 <b>보수월액 재조정</b> (보수 감액) 및 호봉획정	
2015년	2015.2.5.	2015년 채용기준 및 보수월액, 호봉획정, 근무성적평정계획	

또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정기호봉 승급기간은 1년이며 호봉 승급일자는 매월 1일이나 ‘보수지급 계획’에는 정기적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 정기승급일자, 승진자의 호봉재획정 방법 및 관련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단지 아래 표6와 같이 직급별 최대 호봉과 보수월액만을 정하고 있다.

[표6] 2015년도 보수조건표

구 분	직 급			
	선임연구원 (연구관상당)	연구원 가급 (연구사상당)	연구원 나급 (8급 상당)	연구원 다급 (9급 상당)
호봉/보수월액	1~5호봉/ 2,767~3,216천원	1~5호봉/ 2,082~2,507천원	1~4호봉/ 1,831~2,064천원	1~3호봉/ 1,664~1,811천원

특히, 연구보조 인력을 아래 표7과 같이 운영하면서 연구보조 인력에 대한 별도의 채용기준 및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기상위성센터 근무 경력 등을 고려, 연구원(다급)으로 승진시킨 후 최종학력이 고졸인 보조 인력에게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조건인 연구원(다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7] 연구보조원 근무현황/ 2015.5.22.기준

근무부서	인원(최종학력)	직 무	비 고 (채용기준 및 보수표)
위성기획과	<b>1명(고졸)</b>	기관장 부속실 업무	연구원 다급 : <b>학사학위 소지자</b>
위성분석과	1명(대졸)	연구행정 지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보수지급 계획’ 과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및 지급단가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연구원의 각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지급하고 있다.

[표8]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지급단가 및 산정기준 현황

연도	선임연구원 (연구관상당)	연구원			초과근무 시간한도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기급(연구사상당)	나급(8급상당)	나급(9급상당)		
2013	11,389원	9,342원	7,860원	7,104원	12시간/ 1주	공무원에 준하여 산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을 초과근무로 간주)
2014	11,616원	9,529원	8,017원	7,247원		
2015	12,139원	9,957원	8,378원	7,573원		

그 결과 ‘보수지급 계획’에 따르면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보통 미만일 경우 호봉 승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업무 측면에서의 호봉 승급 결정 없이 연초 수립·통보한 호봉승급 차기승급예정일을 근거로 연구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규정에서 정한 호봉승급 제한 대상자의 호봉이 승급될 우려가 있으며, 기상위성연구·행정 등 분야(직무)별 구분 없이 학위 소지 여부만을 채용기준으로 정함으로써 고졸자를 채용·활용하는 데에 대한 근거도 미약한 실정이다.

또 「근로기준법」 등은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관계 지침에 사용자와 연구원 간 합의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산정방법 등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문제 제기 시 연구원과 사용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호봉 승급 방법 변경 등 잦은 보수 지급기준 변경과 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연구원의 직업 안정성과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2. 조치할 사항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①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연구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요 퇴직금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이를 위해 적정 비목인 연금지급금(320-03목)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등에 따른 연구원의 직업 안정성 확보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기준·보수·인사 및 복무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합리적·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 모 범 사 례

번호	1	소관기관	국가기상위성센터	부서	위성기획과
----	---	------	----------	----	-------

제 목 : 기상위성업무 노하우 공유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 배경 및 목적

-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예보분석, 수치예보, 관측자동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성 개발, 운영, 분석·활용분야의 업무 수행
- 이에 따라 센터 구성원의 업무 현황·계획 및 정보를 공유·토의함으로써 센터 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

### □ 추진 내용

- 제1차 기상위성 업무 노하우 공유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방법: 전 직원 1회 발표 / 평균 약 40명의 직원 참석(총 40회 실시)
  - 일자/장소: 2015. 2. 24. ~ 6. 12. 매주 화, 수, 금 08:40~09:10 / 국가기상위성센터
  - 주요내용: 담당 업무의 실적·계획, 협조사항, 관련 최신정보 등 발표
- ※ 제2차 기상위성 업무 노하우 공유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6.10 ~ 9. 22)
- 위성센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방법: 직급별 그룹구성(5급이상, 6급이하, 연구원, 청원경찰 등 4개 그룹)
  - 내용: 위성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 성과 및 기대효과

- 기상위성자료의 품질향상 및 서비스강화 논의를 통한 업무개선
  - 예보지원 강화를 위한 효율적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위성메뉴 체계개선(2015.6.10.)
  - 과별 협력/융합기술로 위성영상의 품질개선(구름정보, 황사, 안개, 태풍 등)
  - 위성자료 서비스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추진(홈페이지, FTP 등)
- 기상위성 분석기술 노하우 공유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
  - 위성업무의 중요성, 개별/과별 업무공유로 자존감 및 상호신뢰도 향상
  - 유사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로 업무 중복 방지 및 생산성 증대
  - 업무노하우 검색, 발표자료 공유를 위한 위성센터 인트라넷시스템 개선



<기상위성 업무 세미나>



<COMIS 위성메뉴 개선>



<기상위성 업무 지식 공유>